

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

2021.05.20.

시그니처자산운용(주)(이하 "회사"라 한다)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자본시장법"이라 한다) 제 45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공개합니다.

I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는 정보

1.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.
 - ①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 - ② 집합투자재산·투자일임재산·리츠투자재산 구성 내역·운용 관련 정보 중 1개월이 경과한 정보
 - ③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2.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.
 - ①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 -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 -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 - ④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 -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내부통제기준 제43조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(이하 "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"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은 정보

II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
1.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
 - ① 사내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: 회사 고유재산 운용업무,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(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및 투자자문업무를 포함, 이하 같음), 리츠 운용업무 상호간
 - ② 사외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: 회사와 회사의 계열회사 및 판매회사

2.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

- ① 회사 고유재산 운용업무 : 회사의 고유재산에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, 미공개중요정보
- ②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: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 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문업무에 관한 정보, 미공개중요정보
- ③ 리츠투자재산운용업무 : 리츠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, 미공개중요정보

III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기준

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 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해당 법인을 거래제한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1. 거래제한 상품

- ① 회사가 인수·합병의 중개·주선·대리·조언 업무, 주권(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)의 인수업무 및 모집·사모·매출의 주선 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·주선·대리·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. 다만,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②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
- ③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거래주의 대상목록

- ①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·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
- ② 회사를 자본시장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 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 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. 다만, 공개 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
- ③ 상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
- ④ 회사가 상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01조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)
- ⑤ 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%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IV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이해상충의 문제 및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다. 다만, 아래 사항은 사전에 정의되거나 알려진 이해 상충의 유형의 예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그 외의 다양한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.

이해상충 유형	세부 내용	이해상충 방지수단
계열회사와의 거래 및 정보제공	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계열회사와의 거래 및 계열회사로의 정보제공	운용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, 회의 통신 기록대장 작성 및 승인
개인투자행위	임직원의 개인적 투자행위	내부통제기준에 의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및 사후신고 절차
재산상의 이익 제공 또는 수령	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	준법감시인에 의한 승인
의결권의 행사	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	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및 준수
대외활동	회사업무 이외의 외부활동	준법감시인 사전승인
겸직활동	임직원의 겸직활동	내부규정 등에 의한 사전 승인
외부자문업체 선정 및 자문수수료 지급	집합투자기구의 설정, 투자, 운용, 자산 매각, 청산 등 각 단계에서 필요한 외부 자문 업체의 선정 및 자문수수료 지급	관련 내부규정에 의한 사전 승인
운용지시(사전자산배분)	여러 집합투자기구(계좌)를 위한 통합 주문	운용역과 트레이더의 분리, 사전 자산배분확인
오류수정	기준가격 산정 및 매매 동의 업무 관련 오류의 수정	보고 및 수정방법 승인
집합투자기구 간 거래	집합투자지구 간의 자산거래	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
판매회사에 대한 정보제공	집합투자재산 정보의 제공	관련 정보의 제공 시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

V.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

1. 고객이익 우선 원칙

-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
-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
-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함

2.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

-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
-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함

-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됨
 -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 없이 정보교류 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함
 - ⑤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.
3. 회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준법감시부서로 하고, 준법감시인을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으로 하며, 각 운용부문의 본부장 및 경영기획본부의 본부장을 정보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